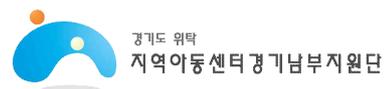


2026년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 2026년도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

## I 사업소개

###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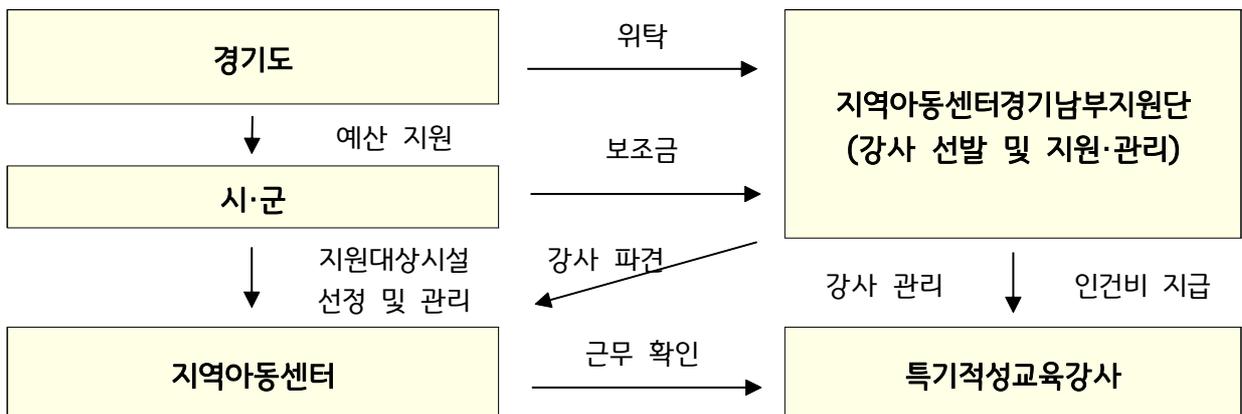
#### 가. 비전과 목표

- 욕구에 맞는 특기적성교육강사 파견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아동의 잠재능력 발견 및 특기 계발

#### 나. 사업소개

- 1)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에 특기적성강사 파견을 통한 예·체능 교육 실시
- 2) 지원대상 : 도내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중 시·군 선정시설(경기남부 442개소)
- 3) 추진체계 및 역할
  -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사업 총괄
  - (시·군) 지원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정산
  - (경기남부지원단) 강사 선발 및 파견, 계약, 노무관리, 보조금 정산보고 등

<그림1> 업무흐름도



#### 다. 연혁

- 2010. 10월 : 기본계획 수립
- 2011. 1월 : 사업 개시(우수 시설 100%)
- 2012. 1월 : 파견 대상 확대(우수 시설 50%+프로그램 부족 시설 50%)

- 2018.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207개소→276개소)
- 2019. 1월 : 화기당 근무시간 조정(3시간→2시간)에 따른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276개소→417개소)
- 2020.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417개소→444개소)
- 2021.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444개소→507개소)
- 2022.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507개소→546개소)
- 2023.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546개소→574개소)
- 2024. 1월 : 사업량 축소(경기도 전체 574개소→567개소)
- 2025. 1월 : 사업량 확대(경기도 전체 567개소→656개소)
- 2026. 1월 : 사업량 축소(경기도 전체 656개소→627개소), 경기남부(사업량 기준 : 442개소)

## 2. 대상시설 선정

### 가. 선정기준

- 월평균 이용아동 10인 이상 시설 중 시·군 자체기준 적용하여 선정
- 아동복지교사 지원시설 중 예체능 동일분야로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지원 제외
- 운영비 미지원 시설(24개월 미경과) 선정 가능

나. 선정주체 : 각 시·군

## 3. 특기적성교육강사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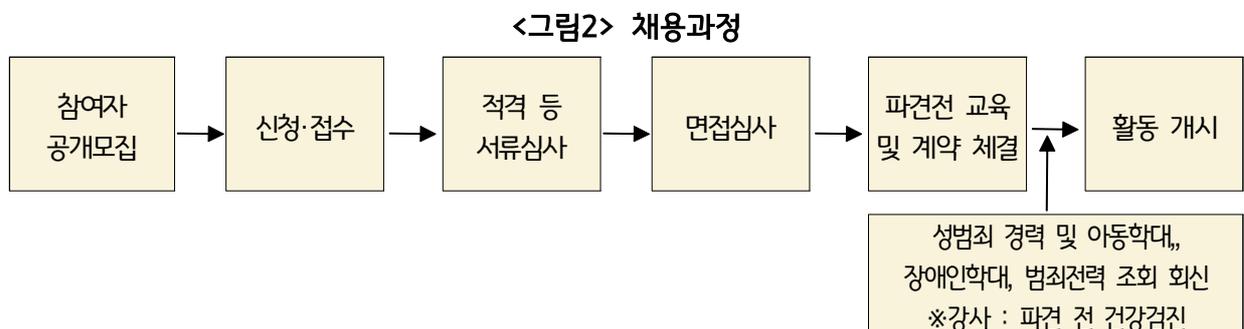
### 가. 자격요건

- 아동지도 경력자, 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 제외 대상 : 해당 시설의 대표자, 시설장, 대표자 및 종사자의 친인척, 사회복지무원,

아동복지교사 등

나. 선발주체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다. 채용과정



4. 2026년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강사 선발 및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위주의 과목을 제외한 특기적성 분야로 확대 모집(아동지도 경력자 중심의 강사 선발)</li> <li>° 공고 및 수요조사 : 2025년 12월 말~</li> <li>° 서류접수 및 서류·면접심사 : ~2026년 1월</li> <li>° 강사 매칭 및 계약식 : 2026년 1월 말</li> <li>° 강사 파견 : 2026년 2월~12월</li> </ul>
강사 교육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오리엔테이션 : 수업계획 논의 및 지역아동센터 이해 교육(1시간)</u></li> <li>-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칭된 강사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의 이해 교육 실시</li> <li>- 첫 1회기 수업 시 1시간은 교육으로 진행함</li> </ul>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 교육 4회(1인당 6시간) : 아동복지시설 필수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li> <li>- 1월 : 지역아동센터 이해(2H)</li> <li>- 2월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1H),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H),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H),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교육(1H)</li> </ul> <p>※단,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추가 강사교육이 발생할 수 있음.</p>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참여기관 및 강사 중심의 현장방문 130개소(2~12월)</li> <li>- 수업 참관 및 관련 의견 청취, 사업안내 및 갈등 조정 등</li> </ul>
성과 발표회	그림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미술분야 참여기관 중심 130개소, 1,000작품 이상 참여</li> <li>- 시기 : 6~10월</li> <li>- 내용 : 그림작품 공모를 통한 성과 공유 및 시상</li> </ul>
	개별기관 자체 성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참여기관 40개소</li> <li>- 시기 : 9~12월</li> <li>- 내용 : 내부심사 통한 개별 센터당 최대 50만원 지원, 현장 방문을 통한 성과 공유</li> </ul>
만족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참여기관, 이용아동, 강사</li> <li>- 시기 : 8~11월(매년마다 시행)</li> <li>- 조사내용 : 지원현황, 연도별·지자체별·주제별·참여자별 만족도 비교·분석</li> </ul>
간담회(평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참여기관, 강사 중 신청자</li> <li>- 시기 : 2~12월 (정기 또는 상시 개설 예정)</li> <li>- 내용 : 전반적 사업평가 및 참여자 의견 청취를 통한 향후 사업내용 반영</li> </ul>

## II 특기적성교육강사

### 1. 역할과 의무

- 가. 강사는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 나. 강사는 위촉계약서(서식1),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에 근거하여 근무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
- 다. 강사는 교육 및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 사업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기남부지원단과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 업무 및 활동

#### 가. 근무조건

##### 1) 업무시간

- 1개 지역아동센터당 **주 1회(회당 2시간)**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대 5개 지역아동센터까지 활동할 수 있음(주당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
- 반드시 안심톡 앱을 통하여 출퇴근 체크해야 근무시간 인정됨(앱 사용법 확인).

##### 2) 업무조건

**<표1> 업무조건**

항목	세부내용
급여	시간당 5만원, 월급여 지급 방식(익월 10일 지급)
수업시간	1일 기준 1회기 2시간 ※ 보강 포함 최대 주 2회까지 수업가능
상해보험 가입	업무상 안전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상해보험 가입지원(고용산재보험 대상 아님)

- 연간 최대 44회기의 수업을 실시함(계약일자 및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2026. 12. 18(금)까지 최대 44회기 수업을 종료하여야 함.
- 보강 : 휴강 발생 시 보강 가능하나 주당 보강 포함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발표회 등으로 수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단 사전확인 필수
- 강사의 근무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른 요일로 대체 근무할 수 있음.

### 3) 급여산정 및 지급

- 강사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지원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음. 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사의 급여는 근무상황 및 업무일지(서식3)와 안심톡 근태내역을 근거하여 실제 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함.
-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10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함(근무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지급 이월).
- 강사는 시간당 단가 기준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며 사업소득세(3.3%) 또는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함.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은 지자체 정액 예산사업으로, 예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표2> 급여지급**

급여산식	참고
시간당 50,000원 × 당월 총 근무시간	- 센터당 연 최대 44회기 수업 진행(초과 회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12. 18(금)까지 모든 수업을 종료하여야 함 (12월의 경우 당월에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근무 마감일을 별도로 정함) ※ 수업 2시간 미충족 시 급여 차감 → 해당 월 내 부족 시간 보강 가능
급여지급 관련	- 제출서류 : <u>근무상황 및 업무일지(서식3)</u> - 제출기한 : 수업 종료 후 <u>익월 3일</u> 까지 - 제출처 : 경기남부지원단 이메일 <a href="mailto:busrugygs@hanmail.net">busrugygs@hanmail.net</a>

### 4) 파견 전 건강검진

- 결핵검사 2가지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잠복결핵은 2026년 신규강사 대상)
- 강사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 3. 계약해지 등

### 가. 계약해지 사유

-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 지역아동센터와 반복적 갈등야기로 인한 교체 요구, 경기남부지원단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지속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강사의 파견 지속을 희망하지 않거나, 업무자질 및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계약해지 절차

- 강사 계약해지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당사자는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단, 법률에 의거하여 공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난치의 전염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한정 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인사조정 위원회 개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 위촉계약 종결

-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남부지원단의 별도의 처분 없이 관계가 종료됨.
- 강사가 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경기남부지원단에 퇴직하기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서식4)를 경기남부지원단에 제출해야 함.
- 퇴직할 강사는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근무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Ⅲ 지역아동센터

#### 1. 역할과 의무

- 가.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안심톡 앱을 통해 강사의 근태관리를 해야 하며 수동입력이 필요할 경우 센터 책임하에 사유를 입력해야 함(안심톡 사용법 참조).
- 나. 지역아동센터는 강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재준비, 교구·기자재 등을 갖추고, 강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강사 노무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다. 지역아동센터는 강사 파견 관련 지역아동센터 약정서,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에 명기된 내용을 준수하며,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라. 지역아동센터는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관련 행사(약정식 및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함.
- 마.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수행 과정에 필요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경기남부지원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바. 지역아동센터는 파견될 특기적성교육강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총 2종의 범죄관련 전력을 조회하고 그 회신서 사본은 수업시작일 전까지 경기남부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FAX 031-236-2643 / E-mail [busrugygs@hanmail.net](mailto:busrugygs@hanmail.net)

<그림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절차



## 2. 운영 관리

### 가. 업무관리

1) 경기남부지원단은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1차 약정식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 및 약정서 체결

- 2차 간담회 : 사업 관련 의견 청취 및 성과공유, 평가 등

2) 지역아동센터는 약정서(서식2)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강사지원은 약정일 이후 동년 12월 18일까지이며, 강사 미채용 시에는 추가모집 등을 통하여 파견이 이루어지므로 지원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4) 지역아동센터가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과 관련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은 서면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며, 계약해지 관련사항 발생 시 인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처리함.

나. 모니터링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원단은 현장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 3. 계약해지 등

### 가. 계약해지 사유

- 지역아동센터가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약정서, 지원사업 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강사를 고유 목적 외에 센터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 아동복지법·형법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강사의 파견을 원치 않는 경우

- 기타의 사유(센터 폐쇄 및 휴지, 신청분야의 아동이 그만두는 경우 등)로 더 이상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 권고를 3회까지 받거나 인사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나. 계약해지 절차

-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당사자는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가 2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후 총 3회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사 파견이 중단됨.

- 지역아동센터에 2차 시정권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은 인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강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사항을 마련함.
- 지역아동센터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과 같이 중대한 사업 규정 위반, 계약 위반은 1차 사유 발생 후 인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형법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인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IV 서식 등

### 1. 특기적성교육강사 위촉계약서 <서식1>

#### 특기적성교육강사 위촉계약서

경기도 위탁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윤종선(이하 “지원단”이라 함)과 강사 \_\_\_\_\_(이하 “강사”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촉기간)** “지원단”과 “강사”의 수업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계약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제2조(수업장소 및 시간, 담당업무 등)** ① 수업시간은 아래 사항에 한하며, 1년 기준 최대 44회기(회기당 2시간)의 수업을 제공한다. 단, 시군별, 파견시기별 회기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명					
수업 요일 및 시간					
담당업무(지도분야)					
총 수업회기					

② 전항의 수업일, 수업 및 종업시각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사”는 “지원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급여)** ① 급여는 시간당 오만원(W50,000)으로 한다.

②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7산하여 익월 10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하며, 10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업무사항)** ① “강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참여아동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강사”는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에서 시행하는 교육,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이를 강사평가에 반영한다.

③ “지원단”이 제시한 근무상황부를 매월 작성하여 수업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무상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월할 수 있다.

**제5조(기밀유지)** “강사”는 근무 중 취득한 “지원단”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사직)** “강사”의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을 해야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는 “지원단”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강사”가 본 계약 및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2. “강사”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거나 보고업무 해태 또는 “지원단”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3. “강사”가 “지원단”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4. “강사”의 아동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강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아동센터나 “지원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6. “지원단”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7. “강사”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 제 규정에 준한다.

2026년 월 일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지원단”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윤 종 선 (인)

“강사” \_\_\_\_\_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2.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약정서 <서식2>

###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약정서

경기도 위탁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함)과 \_\_\_\_\_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지원단”으로부터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센터”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공익추구, 비영리의 원칙)** “지원단”과 “센터”는 공익추구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3조(파견인력 지원기간)** 파견인력 지원기간은 2026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단,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파견이 유보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 본 약정에 의해 “지원단”이 파견하는 강사에 대해 “센터”는 아래 사항에 한해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강사 파견분야	강사명	근무요일 / 근무시간(시:분~시:분)	총 수업회기
		/	

② 이 약정에 의하여 파견된 강사는 활동 해당근무기간 내에 그 효력이 있으며, 파견인력의 근무장소는 “센터”의 사업장 또는 사업현장으로 한다. 전항의 수업일 및 수업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시간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단, “지원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파견인력 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는 “지원단”이 지급 및 관리한다.

**제6조(업무 및 협조사항)** ① “센터”는 교육 준비, 교구 및 기자재 사용 등 참여아동의 특기 계발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센터”는 특기적성교육강사의 노무관리에 있어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에 근거하여 관리하며, “지원단”이 사업 수행과정 중 진행하는 행정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이행확인 및 지도-점검)** ① “지원단”은 “센터”의 사업 참여 약정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경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가 본 계약 및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센터”가 “지원단”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3. “센터”가 더 이상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9조(기타)**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사업 안내서’와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한 “지원단”과 “센터”의 합의 등에 따른다.

2026년 \_\_\_\_\_ 월 \_\_\_\_\_ 일

“지원단”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센터” \_\_\_\_\_ 지역아동센터

단장 조 윤 경 (직인)

센터장 \_\_\_\_\_ (직인)

3. 근무상황 및 업무일지 <서식3>

**2026년 (     )월**  
**근무상황 및 업무일지**

서명 확인란	작성자(강사)	확인자(센터)

참여 기관	시(군)	특기적성 교육강사	분야	
	지역아동센터명		성명	
	재적인원(명)			

주차(회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근무시간	시 분~ 시 분			
출석인원 (해당 수업일 참여인원 합산)	명	명	명	명

주요 활동내용				
------------	--	--	--	--

활동평가	
------	--

비고	
----	--

- ※ 해당 월에 5회기 이상 수업을 진행한 경우, 칸을 나누지 말고 다음 장에 작성하여 2장으로 제출
- ※ 계획서는 강사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그 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센터와 강사 협의 필요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정보	취업(예정)기관명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_\_\_\_\_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심톡 강사 근태관리(센터)

● 근태내역

관리자 근태 보기 시간 역설

2022년 03월 이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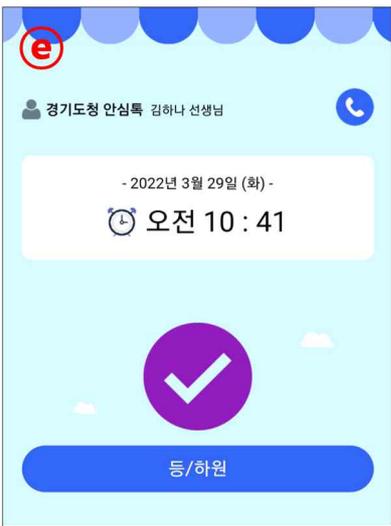
인원 : 2명

이름,그룹명,전화번호,메모를 검색하세요. 검색하기

이름	출근	결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홍길동	9	0	-	-	09:0208:06 17:1117:16	-	-	-	-	-	-	08:1009:00 18:0018:03	-	-	16:00 20:17	-	-	-	09:07 18:10	-	17:26 18:12	-	-	-	-	-	-	-	08:0708:12 17:5618:03	-	-	-	
김하나	2	1	-	-	-	-	-	09:07 18:17	-	-	-	-	-	-	09:00 17:08	-	-	-	-	-	-	-	-	-	-	-	-	-	-	-	결근	-	-
합계	2	13	1	0	0	1	1	0	0	1	0	0	1	1	0	0	2	0	0	0	1	0	1	0	0	0	0	0	0	1	1	0	0

① 관리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보기 방식은 도형과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수동 입력을 할 경우 사유 입력은 필수입니다.

■ 안심톡 출퇴근 인증



경기도청 안심톡 김하나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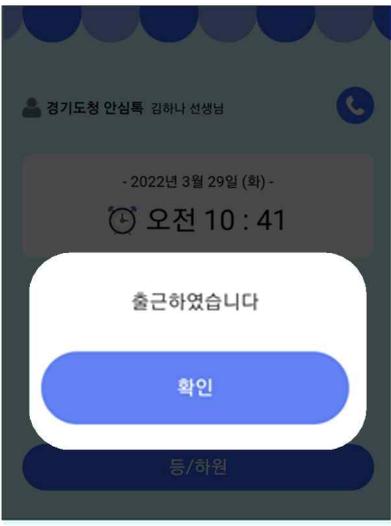
- 2022년 3월 29일 (화) -

오전 10:41

등/하원

**[비콘 장비]**





경기도청 안심톡 김하나 선생님

- 2022년 3월 29일 (화) -

오전 10:41

출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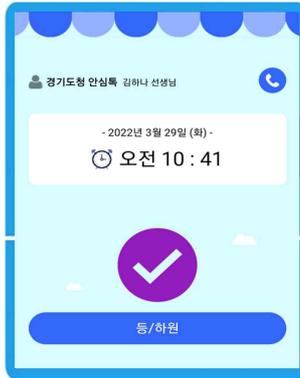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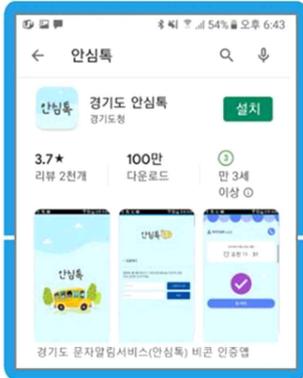
확인

등/하원

③ 안심톡 앱 설치 후 비콘 장비에서 출퇴근 인증을 진행합니다.  
 ★ 특기적성 교육강사는 비콘으로만 출퇴근 인증이 가능합니다.

## ■ 안심톡 앱 사용(강사)

- 1 앱스토어 안심톡 설치
- 2 휴대폰 인증하기
- 3 출근 하기
- 4 출근확인하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톡" 검색후 설치해 주세요.

설치후 안심톡이 실행되면

- > 위치 정보 기능 (GPS) 실행
- > 기기위치, 전화기능 허용
- > 블루투스 기능 실행해 주세요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을 눌러주세요. 문자로 수신된 안심톡 인증번호 입력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센터가 확인되며 근태등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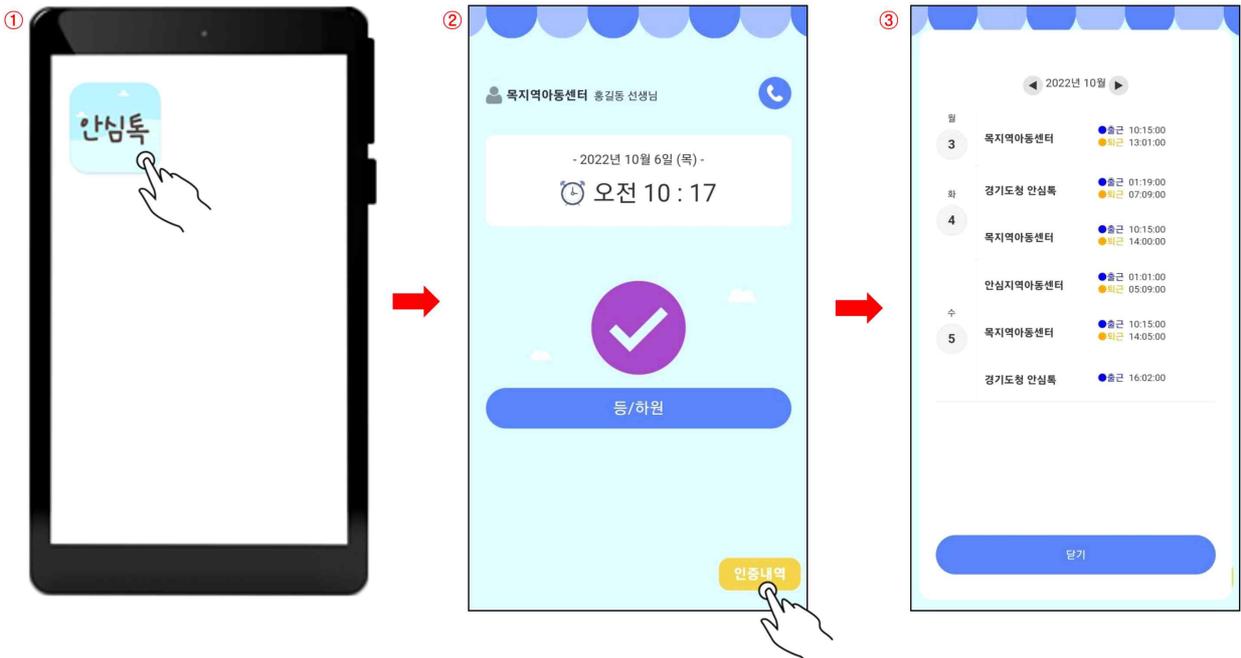
출석체크장비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톡을 실행하면 ~ 등/하원 버튼이 보이며, 버튼을 눌러 인증해 주세요.

※ 출석체크장비에서 멀리있다면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3미터 이내 사용 권장)

"출근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출근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퇴근시에도 꼭 ! 안심톡을 실행시켜서 등/하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 ■ 안심톡 근태확인(강사)



### 인증내역 확인

- 1 안심톡 앱을 실행합니다.
- 2 안심톡 앱 하단 인증내역 버튼을 눌러 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 날짜별 센터 근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메모

---

■ 메모

---